치매관리법

[시행 2024. 7. 3.] [법률 제19904호, 2024. 1. 2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노인건강과) 044-202-3538, 3534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치매의 예방,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6. 12.>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6. 12., 2020. 12. 29., 2023. 3. 28., 2024. 1. 2.>
 - 1. "치매"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, 언어능력, 지남력(指南力),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.
 - 2. "치매환자"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.
 - 3. "경도인지장애"란 기억력, 언어능력, 지남력,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.
 - 4. "치매관리"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・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・연구 등을 말한다.
 - 5. "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
 - 나.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
 - 다.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
 - 라.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
 - 마.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
 - 바.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
 - 6. "치매관리 전달체계"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"치매관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1. 28.>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1. 28.>
 - ④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1. 28.>
- **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5조(치매극복의 날)**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・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

- **제6조(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5. 1. 28., 2023. 3. 28.>
 - 1.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
 - 2.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
 - 3. 치매환자의 치료・보호 및 관리
 - 4. 치매에 관한 홍보・교육
 - 5. 치매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
 - 6.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
 - 7.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
 - 8.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・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
 - 9.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3. 28.>
 - ⑤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·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.<신설 2023. 3. 28.>
 - ⑥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·단체·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23. 3. 28.>
 - ⑦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・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3. 3. 28.>
- 제7조(국가치매관리위원회)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**제8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 -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<개정 2020. 12. 29.>
 -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
 - 2.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 - 4.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
 - 5.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

- 제10조(치매연구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·개발 사업(이하 "치매연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한다.
 -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
 - 2.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
 -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·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(이하 "종합병원"이라 한다),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 -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**제11조(치매검진사업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(이하 "치매검진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, 대상자,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-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 ·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2(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・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・보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상담·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5. 1. 28.]
- **제12조의3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 - 1.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 - 2.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
 - 3.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·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,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, 후견인 후견 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9. 19.]

- **제12조의4(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 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・보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 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. 2.]

- 제13조(치매등록통계사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·관리·조사 사업(이하 "치매등록통계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하며,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. <개정 2020. 12, 29.>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 12. 29.>
- 제13조의2(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관련 사업과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・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)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- **제14조(역학조사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・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**제14조의2(치매실태조사의 실시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,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- 제15조(자료제공의 협조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·위탁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치매환자를 진단·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그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·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 - 1. 치매검진사업
 - 2.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
- 4.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
- 5. 치매등록통계사업
- 6.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
- 7.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
- 8.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
- 9.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)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20, 12, 29.>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12. 29.>
-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20. 12. 29.>
- 제16조(중앙치매센터의 설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 치매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28., 2020. 12. 29.>
 - 1.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
 - 2.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
 - 3.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
 - 4. 치매연구사업 지원
 - 5.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지원 업무
 - 6.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
 - 7.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
 - 8.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의 지원
 - 9.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
 - 10.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
 - 11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 - 12.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
 - 13.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
 - 14.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신설 2015. 1. 28., 2020. 12. 29.>
 -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8.>

[제목개정 2015. 1. 28.]

- 제16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6. 12., 2020. 12. 29.>
 - 1. 치매관리사업 계획
 - 2. 치매 연구
 - 3.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「노인복지법」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
 - 4.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

- 5.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
- 6.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
- 7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- 8.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
- 9.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
- 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. 28.]

- 제16조의3(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(이하 "공립요양병원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공립요양병원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 -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
 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2. 부도, 파산, 해산,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,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 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.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 - 4.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5.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6. 12.]

- 제16조의4(치매안심병원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·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·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·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·인력·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6. 12.]

- **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** ① 시・군・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(이하 "치매안심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9. 4. 30., 2020. 12. 29.>
 - 1.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
 - 2.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
 - 3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 - 4.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
 - 5.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
 - 6.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
 - 6의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
 - 6의3.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
 - 6의4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 - 7. 그 밖에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 -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,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(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안내할 수 있다.<신설 2019. 4. 30.>
 -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·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9. 4. 30.> [전문개정 2018. 6. 12.]
- **제17조의2(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,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
 - 2. 치매환자의 치료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
 - 3.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
 - 4.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
 -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, 치매 관련 전문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. 28.]

제4장 보칙

- 제18조(비용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28., 2018. 6. 12.>
 - 1.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,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,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, 제 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의2. 제16조,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,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
- 1의3.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
- 2.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· 홍보에 드는 비용
- 3.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・훈련에 드는 비용
- 4.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)**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제20조(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・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5장 벌칙

제21조(벌칙)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칙 <제19904호,2024. 1. 2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